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금리 무이자 등 〉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51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창민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6.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
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 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11조(대출 금리) ① -----학 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 이자로 한다. 다만, 생활비대출 금리 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 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 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 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 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 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 함에----- ----- ----- ----- ----- ----- ----- -----.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 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 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 리(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 ----- -----대출잔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u>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¹⁾”이라 함)을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로, 생활비대출 금리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채무자가 상환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을 이자,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여 대출잔액으로 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시 등록금 부분을 제외하고, 대출이자,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여 대출 규모 축소를 통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사유로 제한받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출사업의 특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출 및 상환을 통하여 운영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특성상 조달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금리를 결정²⁾한다는

1) ICL: Income Contingent Loan

2)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 보증 하에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ICL 사업 시행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원리금 상환율이나 재원 조달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무이자로 할 경우,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해소될 것이나, 조달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단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학자금대출 사업의 구조상 한국장학재단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물가상승률,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현황 >

연 도		'18	'19	'20	'21	'22	'23	'24
물가상승률*		1.50%	0.40%	0.50%	2.5%	5.1%	3.6%	2.9% (5월 기준)
조달금리**		2.54%	2.38%	1.35%	1.82%	4.05%	3.85%	진행중
대출 금리	1학기	2.20%	2.20%	2.0%	1.7%	1.7%	1.7%	1.7%
	2학기			1.85%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조달금리: 신규 채권 및 기존 채권의 가중평균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지막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운용되고 있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산정 시 등록금부분을 무이자로 하여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21년 1학기부터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해왔고,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ICL 사업이 2023년 12월 8일에 의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ICL 이자면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³⁾되었다는 점과 함께,

개정안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개인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이자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⁴⁾이라

3)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①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휴학기간 포함)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② 이자면제 대상을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③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

덧붙여 교육부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화되었을 때, 향후 10년간 3,010억원(ICL 3,403억원, 일반 △393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단위: 억 원)

자료 : 교육부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자 외에도 납부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까지 제외하는 것은 의무상환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및 납부기한 미준수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계부처인 국세청은 개정안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동법 제30조⁵⁾의 연체금 징수규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연체금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부과된 채무인 학자금 상환에 공평을 기하고, 상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수단인바, 연체금 및 가산금을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앞서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

-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연체금)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할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취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

(2024. 8. 현재)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을호의원	제2200639호 (2020.6.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의 상한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

문 의 처

02) 6788-5193